

인지세 납부안내(1/5)



신고/납부

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.

세금납부

- 국세납부
- 지방소득세 납부
- 인지세 전자문서납부

세금신고 삭제요청

신고부속서류제출

신고/납부 이용시간

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:00 ~ 24:00	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365일 07:00 ~ 23:30
--	--

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

2

- 01 세금신고 대상선택
- 02 세금신고 진행
- 03 세금신고 접수확인

-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
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
-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
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생성 →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증(형식 · 내용검증) 후 제출
- 접수증 확인 · 출력
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[신고내역]에서 접수증 확인 · 출력

세금 납부 이용절차

- 01 세금납부 대상선택
- 02 세금납부 진행
- 03 세금납부 확인

세금신고

- 부가가치세
- 법인세
- 원천세
- 종합부동산세
- 교육세
- 개별소비세
- **인지세**
- 증권거래세
- 교통에너지환경세

일반신고

-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
- 해외금융계좌 신고
- 사업용(공익법인전용)계좌 개설
- 공익법인 보고서제출
-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
- 노인여유기지대하구신청

QUICK

- 로그아웃
- 현금영수증
- 전자세금계산서
- 연말정산간소화
- 근로장려금지연장려금
- 브라우져 환경설정
- 접기

인지세 납부안내(2/5)

≡ 신고/납부

세금신고

인지세 ★

Step 1. 세금신고

Step 2. 신고내역

Step 3. 삭제내역

-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. (신고이용시간 : 06:00~24:00)
-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: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.
- 단, 인지세 현금납부(선납) 신고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를 정당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.
- 접수증 및 신고요약정보는 [STEP 02.신고내역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지세 신고/납부

도움말

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



인지세 현금납부(선납/후납) 신고

현금납부신고
작성(선납)

현금납부신고
작성(후납)

인지세 납부특례

대리납부신고
작성(특허청)

인지세 전자납부(전자문서)

전자문서납부

증빙서류제출

증빙서류 제출

- 인지세 현금납부(선납/후납) 신고서는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- 인지세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은 경우 인지세 납부 후 인지세 현금납부(선납)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(후납)에 대해서는 그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"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(<http://edoc-revenuestamp.or.kr>) 사이트"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≡ QUICK

로그아웃



현금
영수증



전자세금
계산서



연말정산
간소화



근로장려금
지녀장려금



브라우저
환경설정



접기 ^

인지세 납부안내(3/5)

01.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

< 인지세 납부시 주의할 사항 >

- 본 화면은 전자문서 계약에 대한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화면이며,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금납부(선납, 후납) 승인을 받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「홈 > 신고/납부 > 인지세 현금납부(선납/후납) 신고」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계기관 홈페이지(기타기관 제외)에서 인지세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자진납부, 타인세금납부 메뉴나 은행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는 정상처리되지 않습니다.

과세대상 전자문서 **① 기타기관 선택 후 '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' 입력**

* 관계기관: 기타기관 ▼ 계약상대방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
* 관계기관을 "기타기관"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상호를 직접 입력합니다.

* 과세문서 종류: 002 납부/위임(3천만원초과 ~ 5천만원이하) **조회**

납세의무자 **② 조회버튼 클릭**

* 납세자 구분: 법인 개인

* 사업자등록번호: [] - [] - [] **확인** 상호(법인명) []

법인등록번호 [] **확인**

주민등록번호 [] - [] 성명(대표자) [] **확인**

납부세액 계산

* 계약번호: [] **조회** 전자문서 관리번호 [] 공고번호입력

나라장터,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먼저 조회버튼을 이용하여 계약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과세물건 소재지: 기본주소 [] 주소검색 []
 상세주소 []

* 계약금액: 40,000,000 원 * 과세문서 작성통수: [] 통

* 작성일자: 2017-08-31 * 납부세액: 40,000 원

※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할 인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.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경우 과소납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.

제출하기

QUICK

- 로그아웃
- 현금영수증
- 전자세금계산서
- 연말정산간소화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- 브라우저 환경 설정
- 접기

인지세 납부안내(4/5)

신고/납부

세금신고

인지세

Step 1. 세금신고

Step 2. 신고내역

전자문서납부 참고사항

01.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

< 인지세 납부시 주의할 사항 >

- 본 화면은 전자문서 계약에 대한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화면이며,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금납부(선납, 후납) 승인을 받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「홈 > 신고·납부 > 인지세 현금납부(선납/후납) 신고」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계기관 홈페이지(기타기관 제외)에서 인지세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자진납부, 타인세금납부 메뉴나 은행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는 정상처리되지 않습니다.

과세대상 전자문서

관계기관: 기타기관 ▼ 계약상대방: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
※ 관계기관을 "기타기관"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상호를 직접 입력합니다.

과세문서 종류: 조회

공통코드목록조회

공통코드목록을 조회합니다. 입력된 조회조건으로 공통코드목록에 유효값이 조회됩니다.

① '도급' 선택

코드명:

조회하기

공통코드목록(인지세세법과세문서구분코드)

코드	코드명	선택
030	도급/위임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031	도급/위임(1천만원초과 ~ 3천만원이하)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032	도급/위임(3천만원초과 ~ 5천만원이하)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033	도급/위임(5천만원초과 ~ 1억원이하)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034	도급/위임(1억원초과 ~ 10억원이하)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선택"/>

닫기

② 계약금액 확인 후 선택합니다.

QUICK

- 로그아웃
- 현금영수증
- 전자세금계산서
- 연말정산간소화
- 근로장려금
자녀장려금
- 브라우저
환경설정
- 접기 ^

확인

1 통

0 원

수 있습니다.

